

(별지2)

○ 부천시 정보화촉진조례 제13조(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)

③시장은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○ 부천시 정보화촉진조례 제15조(지역정보센터의 사업)

1.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
2.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
3.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·연구 및 용역 사업 또는 전산처리업무
4. 정보화를 위한 홍보, 계몽 및 교육활동
5. 정보화 학술연구 및 관련 지원 활동
6. 기타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.